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90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김원이·김동아·위성곤

허성무 · 오세희 · 이정문

민병덕 · 서삼석 · 김성환

진선미 · 김승원 · 한정애

김정호 · 정진욱 · 김남근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(2022년 기준)로 전체 기업의 99%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.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·연구개발·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(2024년 기준)로 집계됨.

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,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 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'갑질'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음.

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(24년 9월)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(20.4%)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.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(前전경련)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%와 크게다르지 않은 수치임.

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.6%(70곳)가 '납품단가 후려치기'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·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함.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(55.9%)으로 과반수를 차지함.

예컨대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 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(본사)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 고 있음.

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,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조합,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.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"사업을"을 "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공동사업"이라 한다)을"로 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조합의 협의요청권) ① 조합이나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 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을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.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과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의2(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11조의2(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) ① -----요건에 해당하는 조합, 사업조 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 1호,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(이하 이 조에서 "공동사업"이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라 한다)을-----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가격인상, 생산 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0조의2(조합의 협의요청권) ① 조합이나 사업조합 및 연합회 가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을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 시 거래조 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, 성실하 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.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조합의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과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